

## 녹색건축 인증기관 모집 공고
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6조 및 「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6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

**1. 모집분야 :** 녹색건축 인증기관

**2. 공고기간 및 모집기관 수 :** '26.6.29.(월) ~ '26.9.30.(수), 최대 2개 기관

※ 서류접수 기간 : '26. 10. 1.(목) ~ 10. 16.(금)

**3. 응모자격 :** 「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

**4. 응모방법 및 구비서류**

가. 응모방법

- 「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(이하 규칙)」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'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' 및 구비서류를 제출

## 나. 구비서류 (사업계획서 또는 증빙자료에 구비서류 통합하여 제출)

- 1) 법인등기부 등본(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(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)
- 2)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
- 3) 전문분야\* 중 5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상근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(규칙 제4조제2항)

-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-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-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-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
※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[별표 1] 전문분야

- 4)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 (규칙 제4조제2항)

- 녹색건축 인증 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
-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
-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
- 녹색건축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
-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
-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관한 사항

5)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유사 인증 및 사업 실적, 관련연구 실적 등)

6)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서류 일체 (규칙 제4조제3항)

-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
- 심사전문인력 보유 증명서류(규칙 제4조제2항제2호 준용)
- 인증업무 처리규정(규칙 제4조제2항제3호 준용)

7) 청렴 서약서 ※ 서약서 양식은 붙임 4 참조

#### 다. 응모 자격제한 및 자격박탈 등 유의사항

1)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동\*이 신고되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하며, 선정 이후에도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함 ※ 신고서식은 붙임 5, 신고처는 접수방법 참고

\* 부적절한 행동 : 기관선정 청탁 등 부적절한 언행, 심의위원에 대한 사전 접촉,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,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,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경쟁기관에 유포하는 경우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동 등을 모두 포함

2)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9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(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),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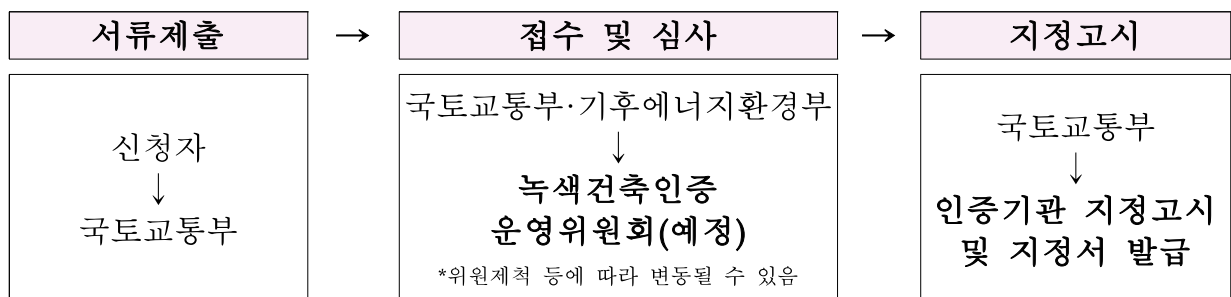
3) 기관 평가 시 기관에서 제안한 인력, 시설, 조직운영 등에 관한 계획 이행여부를 운영위원회 및 운영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, 타당한 사유 없이 계획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시 탈락될 수 있음

- 4) 접수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- 5)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함
- 6)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 마감일 이후 심사위원 명단 공개. 다만  
신청기관과의 제척·회피·기피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
  - 제척·회피·기피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, 심사위원 또는 신청기관 중 한 건이라도 저촉될 경우 심사위원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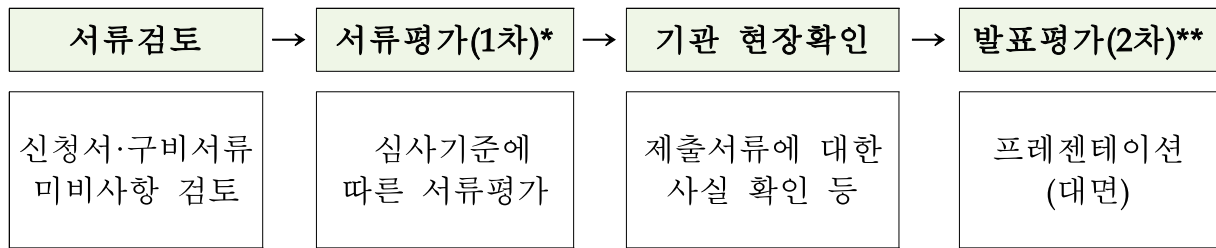
- 본 건과 관련하여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, 그 밖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결정 및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
- 본 건과 관련하여 신청기관의 용역, 자문, 연구, 감정을 수탁하는 등 최근 3년 이내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
- 본 건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신청기관에서 재직한 적이 있는 경우
- 본 건과 관련하여 신청기관과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기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 5. 지정(심사) 절차

### 가. 주요절차



나. 심사절차 ※ 심사기준은 붙임 2 참조



\* 서류평가 85점 이상 기관에 한하여 기관방문하여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진행

\*\* 발표평가 시 서류평가 결과는 반영하지 않으며 최고점 획득 기관 선정 추진

다. 심사결과 발표 및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(예정) : '26. 12월

- 국토교통부 고시(홈페이지 훈령·예규·고시) \* 일정 변경될 수 있음

## 6. 신청서 접수

가. 접수처

- 우편 :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한국건설기술연구원\* 8동 제로카본그린홈 6층 (녹색건축센터)

\* 「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3항에 따른 운영기관이자, 동 규칙 제3조제3항 제7호에 따라 신규 인증기관 모집 업무 수행

- 전자문서 : [zzan1113@kict.re.kr](mailto:zzan1113@kict.re.kr)

나. 접수일 : '26. 10. 1(목) ~ '26. 10. 16(금)

- 공고기간('26.6.29~9.30) 종료 후 16일간 서류 접수

## 다. 접수방법

- 우편 및 전자문서 2가지 방식 모두 제출 요망(방문접수 금지)
- ※ 접수 시작일(10월 1일) 9:00시부터 접수 마감일(10월 16일) 18:00까지 한국  
건설기술연구원에 도착한 건에 한하여 유효함
- 신청서(1부), 청렴서약서(1부),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(15부)  
출력·제본하여 제출 ※ 제출서류 안내 참조
- \* 링제본 금지하며,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는 각 별도 제본할 것
- \*\* 사업계획서는 핵심사항 위주 개조식 작성. 40페이지 이내로 제한함
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(녹색건축  
인증 운영기관)(☎ 031-910-036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 1 : 신청서】

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

어두운 난( 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| 접수번호 | 접수일    | 처리일             | 처리기간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신청기관 | 기관명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| 대표자    | 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|      |
|      | 소재지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| 전화번호 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| 설립 근거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| 설립 목적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| 설립 연월일 |                 |      |
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6조제2항 및 「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  
(또는 대리인)
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  
(전화번호: 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            | 1.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<br>2. 「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<br>3. 「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 | 수수료<br>없음 |
| 국토교통부장관<br>확인 사항 |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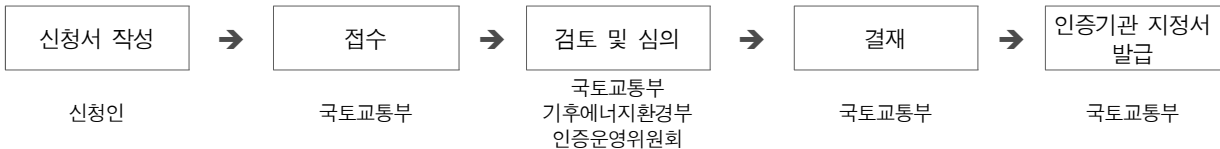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 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【붙임 2 : 심사기준】

## 녹색건축 인증기관 서류평가 기준

| 심 사 항 목                   | 세 부 기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 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기관 전문성<br>(20)            | 계량평가 기관 전문성(유사업무 추진실적 등)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량평가 기관의 재무 건전성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량평가 기관설립 목적의 공익성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|
| 전담조직 및<br>업무수행 체계<br>(20) | 전담조직의 독립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담조직의 구성 및 업무수행 체계 적절성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업무수행의 객관성·투명성 확보방안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증결과 신뢰도 향상 방안(내부 검증 등)                  | 5   |
| 인력 적절성<br>(20)            | 예상 인증실적 및 인증인력 규모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증인력 분야별 전문성·경험도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정 인증인력(녹색건축인증전문가(G-SEED ID) 등)<br>확보 계획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정 인증인력 확보 계획의 타당성·실행가능성                 | 5   |
| 인증업무<br>처리규정<br>(20)      | 인증업무 처리규정, 절차 등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증관련 보안 및 기밀유지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증업무 내부감사, 경영검토 절차 등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증인력 관리를 위한 인사규정(내규, 상벌 등)               | 5   |
| 지속가능성<br>(20)             | 기관장의 의지 및 역할 이해도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증 수입의 활용방안<br>(공익사업, 인증제도 발전 기여 등)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업무 수행 공간 및 사무장비의 보유현황 및 계획       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증 제도발전 기여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

(가점안내)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곳에 본사 또는 지역사무소가 있는 경우 지속가능성(20)항목에서 가점 2점 부여

## [계량평가 기준]

- (기관 전문성) 공고일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지난 3년간의 실적
  - 건축유관 분야의 인증기관으로서 활동실적 (1년을 1건으로 인정)
  - 녹색건축, 에너지, 인증제도 등 관련분야 연구 및 용역 등 활동실적(연 1억 이상, 단독수급 건, 공동수급 시 기관의 확보 예산이 연 1억 이상인 것에 한함)

### < 배점기준 >

| 분 류 | 5건 이상 | 4~2건 | 1~0건 |
|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점 수 | 5     | 3    | 1    |

- (재무 건전성)
 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·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

### < 배점기준 >

| 공공기관<br>* 기재부<br>계약예규 참조 | 초과 | 경영평가 B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만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비영리법인<br>및 비영리<br>민간단체   | 초과 | 경영평가 B 등급 또는 주식회사 기준에 준함            | 미만<br>(평가등급 없음 포함) |
| 주식회사 및<br>기타             | 초과 | BB- 등급, 기업어음 B0 등급<br>신용평가등급 BB- 등급 | 미만<br>(평가등급 없음 포함) |
| 점 수                      | 5  |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|

- (기관설립 목적의 공익성)

### < 배점기준 >

| 분 류 | 공공기관 및<br>비영리법인* | 비영리<br>민간단체 ** | 주식회사 | 기타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|
| 점 수 | 10               | 7              | 5    | 3  |

\* 비영리법인: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
\*\* 비영리민간단체: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
## 녹색건축 인증기관 발표평가 기준

| 심 사 항 목      | 설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 점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공공성<br>및 공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증업무는 인허가 관련 사항이므로 업무 수행의 공공성 확보, 유지관리 방안 등</li> <li>○ 공정한 평가를 위한 인증 품질 관리 체계, 방법 등</li> <li>○ 적정 평가인력 확보 및 유지방안 등</li> </ul> | 40  |
| 전문성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관 및 인증 조직의 전문성 강화, 유지 및 발전 방안 등</li> <li>○ 분야별 전문가 확보 및 인증평가 참여인력의 균형 유지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| 35  |
| 제도기여도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증업무 수행 외 인증제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 (인증제도 확산 및 고도화, 이익에 대한 공적 기여방안, 교육, 국제협력 등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  |
| 합 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

### [안내사항]

- 발표평가의 경우 서류평가 85점 이상 획득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현장 확인 시 문제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
- 발표평가는 PPT로 진행하며 발표 30분 이내, 질의응답 15분 이내 진행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발표평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
- 동점인 경우 공공성 및 공정성 → 전문성 → 제도 기여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

【붙임 3 : 지정 요구사항 가이드라인 및 자가점검표】

| 분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가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1. 기관 전문성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-1. 유사업무 추진실적<br>※ 계량평가 기준에 따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 1-2. 신청기관의 재무상태가 건전할 것<br>※ 계량평가 기준에 따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 1-3. 기관설립 목적의 공익성<br>※ 계량평가 기준에 따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 <b>2.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-1. 전담조직의 독립성<br>※ 인증업무 품질확보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독립성 보장방안<br>※ 조직구조(조직도 및 업무분장)에 최고경영자, 인증관련 인원(심사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 등)의 역할, 책임 및 권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 2-2. 전담조직의 구성 및 업무수행체계의 적절성<br>※ 인증업무에 관한 조직이 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있고, 이에 따라 적합한 인원으로 구성될 것<br>※ 전담 조직 및 인력은 녹색건축 인증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<br>※ 인증책임자, 인증담당자 등의 지정 적합성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 2-3. 업무수행의 객관성·투명성<br>※ 인증업무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·권한행사 금지, 인증관련 개별적인 기술지원·자문·컨설팅·사내교육 금지, 이해상충시 인증업무 배제, 부당한 요구금지 등 리스크 방지를 위한 규정(절차 등 포함), 결과 및 공정성 보장방침, 최고경영진 서명, 직원들의 선언 등<br>※ 인증업무 외 활동을 통해 인증업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고 인증품질 저하 우려가 없을 것, 조직 내 인증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 및 상세업무, 공정성 관련 주요리스크 분석절차, 결과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책 등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 2-4. 인증결과 신뢰도 향상방안<br>※ 업무단계별 내부검증체계 및 지속적 개선활동 관련 관련규정, 계획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
| 분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가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3. 인력의 적정성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3-1. 인증인력 규모의 적정성</b><br>※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상근 인증인력 보유여부,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,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규모 확보 및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 <b>3-2. 인증인력의 분야별 전문성·경험도</b><br>※ 인증인력의 자격, 학위, 경력 등 관련분야의 전문성·경험도<br>※ 인증인력 적격성 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기준<br>- 지식, 스킬, 자격, 교육, 학력, 실무경력, 인증경력 등<br>※ 실제 원활한 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한 실무인력 보유정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 <b>3-3 및 4. 적정 인증인력(녹색건축인증전문가 등) 확보계획 등</b><br>※ 전담인력 구성을 위한 녹색건축인증전문가 등 확보 계획 및 계획의 타당성, 실현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 <b>4. 인증업무 처리규정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4-1. 인증업무 처리규정 및 절차 등의 적정성</b><br>※ 인증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규칙 4조2항에서 요구하는 문서 보유 및 내용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 <b>4-2. 인증업무 보안 및 기밀유지 방안</b><br>※ 개인정보 보호, 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비밀준수·기밀유지 서약서, 인증기관 사무실 내의 문서보안(케비닛 시건 등)과 컴퓨터 보안 관리 등 절차 및 운영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 <b>4-3. 인증업무 내부감사, 경영검토 절차 등</b><br>※ (내부감사) 인증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 규정(계획수립 및 준비, 내부감사자 선정(자격 및 독립성), 내부심사 실시(연1회 이상) 및 후속조치 등<br>- 인증결과 정확성 등 인증품질·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체 관리 절차 및 계획 등<br>※ (경영검토) 경영검토 규정(시기,주기,방식 등) 등, 보고서 포함사항(인증업무의 목표·성과, 내부심사 및 외부평가 결과, 시정조치, 예방조치 및 개선 관련사항, 고객만족도,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결과, 관련 법규의 변경, 공정성 관리결과, 이전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 <b>4-4. 인증인력 관리를 위한 인사규정</b><br>※ 인증인력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관 인사내규, 상별규정 등 인사체계 구축<br>※ 인증인력 내·외부 교육훈련 보장절차, 계획, 예산확보 방안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
| 분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가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5. 지속가능성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-1. 기관장의 의지 및 역할 이해도<br>※ 기관장의 의지와 이해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설명 및 자료<br>※ 필요시 현장심사에서 기관장 인터뷰 등 있을 수 있음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 5-2. 인증수입의 활용방안<br>※ 녹색건축, 인증제도 발전 등 공익사업 연계, 이익금을 활용한 공공 기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 5-3. 시설, 기술, 장비 등 보유현황<br>※ 인증업무를 위한 별도 공간 및 시설 등 적절한 환경조성, 인증 수행을 위한 검사·실험장비 보유현황 또는 구매계획 등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 5-4. 인증제도 발전기여 계획<br>※ 제도 고도화 및 확산을 위한 노력, 서비스 개선 방향 제언 등<br>※ 유관기관(운영기관, 지자체 등) 및 이해관계자 협업 계획 등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
【붙임 4 : 청렴서약서】

청렴서약서

본인은 2026년 녹색건축 인증기관 신규지정 응모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녹색건축 인증기관 신규지정에 응모함에 있어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\*도 수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.
2. 본인은 녹색건축 인증기관 신규지정에 응모함에 있어서 신규지정 심사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동\*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\* 부적절한 행동 : 기관선정 청탁 등 부적절한 언행,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,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경쟁기관에 유포하는 경우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모두 포함

3. 본인은 서약서 작성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, 본 서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.

2026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기관장 및 대표 이사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 장관 귀하

【붙임 5 : 부정청탁 신고서】

## 신고서(제3자 신고용)

| 접수번호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접수일자                |  | 처리일자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
| 신 고 자          | 성명  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<br>(외국인등록번호) |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직업<br>(소속)     | 연락처                 |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
| 피신고자<br>(신고대상) | 성명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직업<br>(소속)     | 연락처                 |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법인·단체등의 경<br>우 | 명칭                  |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|  |      |
| 대표자 성명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
| 신고취지 및<br>이유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
| 법 위반행위<br>내용   | 일시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장소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
| 증거자료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
| 비고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

위와 같이 피신고자(신고대상)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모집에 관한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자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
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